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 등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함(안 제41조의6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